

진정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제정

2013. 12. 30.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제정에 대한 진정서

진정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담당 : 윤철한 02-3673-2146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담당 : 장여경 02-701-7687

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5층

담당 : 김영홍 02-9210-4709

지난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반하여 영리목적 등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안)은, 수년간 공론화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훼손하고, 법 위의 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행위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가이드라인(안) 2조(정의) 1항 “공개된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공개된 개인정보”란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안) 제2조(정의)1항]

- 1) 개인이 웹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의 특정 목적 하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 2) 위 일반 공중에 공개된 경우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큼니다. 특히, 위 조항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심화시켜서 날로 심각해지는 피싱·스미싱·파밍과 같은 사기 수법의 진화를 촉진시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큼니다.

2. 가이드라인(안) 3조(공개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동의권 법률위반 문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이드라인(안) 제3조(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1항]

- 1) 앞서 본 것과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결합하여, 가이드라인(안) 제3조 제1항은 광범위하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의 수집시 동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3자 제공에 대해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개인정보가 공개가 된 것일지라도, 개인정보 주체에게 수집 여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허용할지 여부, 제3자에게 제공을 허락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일반 공중에 공개된 것일지라도’ 개인정보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가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지만 하면, 아무런 동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빈껍데기만 남은 셈입니다.

- 2) 가이드라인(안) 3조(정의) 2항 3항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조합, 분석 등의 처리 사실을 웹에 공개하는 것을 규정하여 위 제3조 제1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장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이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책으로는 충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 수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분석된 자신의 정보내용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가이드라인(안) 제4조(이용내역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권 무력화 문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내역을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이하 중략] 가이드라인(안) 제4조(이용내역정보 수집)]

이용내역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여기에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정보나 커뮤니티 활동정보, 위치정보, 쇼핑리스트 등 개인의 민감하고도 내밀한 사생활의 껍데기 담겨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런 정보를 별도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용자가 거부사실을 표시해야만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것(소위 ‘오픈 아웃’)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 원칙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4. 가이드라인(안) 5조(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 프로파일링 규정의 불법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조합·분석·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이하 중략) [가이드라인(안) 제5조(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

1)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생성을 개인정보의 처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조합·분석·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안)의 위 조항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않는 생성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규정에도 반합니다.

2)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는 것은 이용자에게 대하여 식별화 된 새로운 프로파일링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의를 통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명의 개인은 영업목적 및 감시의 목적으로 세밀하게 식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만연히 허용하게 된다면, 전 사회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 시켜 개인을 통제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 가이드라인(안)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가이드라인(안) 제6조(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조합·분석·처리) 비식별화 조치의 허위에 대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안) 제6조(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조합·분석·처리)]

위 조항은 애초 부당하게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포장일 뿐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첫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비식별화할 의무가 없어서, 영업목적을 넓게 해석하면 이 경우에는 식별가능한 프로파일링 파일을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제10조(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이용) 조항에서 ‘정보주체가 거부사를 표시할 경우 서비스에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식별 가능성을 남겨둘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6. 가이드라인(안) 제11조(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제3자제공)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공유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안) 제11조(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제3자제공)]

1)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등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동의 없이 광범위하고 제한 없이 제3자에게 공유되는 “공개된 개인정보”는, 이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권리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책임의 소재와 그 부담을 개인에게 부담 지우게 됨으로, 정보주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합니다.

7. 결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상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관리통제권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함의 없이 침해하는 역할을 할 소지가 큼니다만, 그 절차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각 기관에서 필요 적절한 조치를 하여주시길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프로파일링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필요하다면, 이 논의는 불투명한 공간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세심하게 투명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 첨부 : 가이드라인(안) 이 침해하고 있는 각 법률조항들

<참고> 가이드라인(안) 이 침해하고 있는 각 법률조항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항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를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